

제 11차

학술포럼

주 제

“목회자와 교회음악지도자 : 대화 (1)”



한국교회음악협회
KOREAN CHURCH MUSIC ASSOCIATION

모시는 글

이번 제 11차 학술 포럼에 참석하신 교회 음악 동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하재송 위원장님이 학술분과 위원회를 맡아 새롭고 야심 차게 기획한 내용입니다.

교회 음악인들이 사역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중점으로 거론하며 개선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대화로 소통해야 할 것 등 교회 음악의 실재적인 면들을 차례로 다루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11차 포럼은 목회자와 교회음악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안들을 서로 나누고 방법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후 2018년 11월 24일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이 기 선

목 차

모시는 글	3
목 차	5
순 서	6
참여하신 분들	7
주제 토론	9

“목회자와 교회음악지도자 : 대화 (1)”

순서

등 록 3:50~4:00

발제와 토론 4:00

좌장 : **하재송** 교수

발제 : **양정식** 교수

- 교회음악지도(목회)자 현황과 제도에 관한 소고

토론 : **문성모** 목사

광고와 폐회 6:00

참여하신 분들

좌장 : **하재송** 교수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교회음악석사, 음악박사)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강사 및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역임
- **현**,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창신교회 협동목사 겸 호산나찬양대 지휘자
HIM Chamber Choir 단장 겸 상임지휘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복음주의교회음악학회 회장

발제 : **양정식**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B.A.)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B.A.)
-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음악지도자과정 졸업(Dip.)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M.Div.)
- 미국 Westminster Choir College of Rider University 대학원 교회음악석사 졸업(M.M.)
- 미국 Claremonte Graduated University 대학원 교회음악박사 졸업(D.C.M.)
- 예배연구소 소장 및 워십리더코리아 상임 및 실행이사 역임
- 국제예배사역자연합 예배목회자학교 공동대표 역임
- 호프 국제 대학교 (Hope International Univ.) 강사역임
- 베데스다 기독교대학교 (Bethesda Christian Univ.) 강사역임
- **현**,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삼광교회 협동목회자
앙상블(Ensemble)합창단 상임지휘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복음주의교회음악학회 총무

토론 : **문성모** 목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작곡: B.M.)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M.Div.) 및 대학원(Th.M.) 졸업
- 독일 Osnabrueck Universitaet 졸업(Dr. Phil. 철학박사, 음악학)
- 제22차 세계개혁신교회연맹(WARC) 서울총회 대회가(大會歌) 작곡
-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수상
- 대전신학교 총장 역임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역임
-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역임
- **현**, 강남제일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 이사장
한국찬송가공회 이사
베아오페라예술원 이사장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이사
한국국민악회 회원

발 제

교회음악지도(목회)자 현황과 제도에 관한 소고

양 정 식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I. 서론

“찬양대가 죽을 썬면 설교도 힘들다”

한 목회자의 오랜 사역의 여정 가운데 나온 고백이다. 모든 예배 순서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설교와 음악이다. 교회력과 절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교회음악담당자가 함께 동역하면 설교준비와 목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음악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확신하며 개인의 믿음과 찬양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누구보다 잘 실천했던 루터의 고백을 언급하며 교회음악의 경쟁력이 곧 그 교회의 경쟁력을 가늠케 한다는 어느 목회자의 주장은 교회음악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교육과정과 제도마저 무너져 버린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며 교회음악전문양성과정에 교사(敎師)로 몸담고 있는 필자의 가슴에 아직도 메아리처럼 울리는 한마디가 되어버렸다.

서두를 빌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첫째는 교회음악이란 무엇인가? 즉 교회음악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묻는 질문이다. 리버는 교회음악의 바람직한 정의를 위해서는 ‘(교회음악이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music?))’ 보다는 ‘교회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What is the church music for?)’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회음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란 보편적 정의와 해석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음악가에 관한 것이다. 교회음악가는 교회에서 음악 하는 사람을 말하는가? 아니면 교회음악을 전문영역에 두고 관련 지식과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를 일컫는가? 교회음악인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교회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명칭과 역할을 보다 넓은 의미로 접근한다면 교회 음악인에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와 관련된 음악을 부르거나 연주하고 작곡하는 모든 예술적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음악인이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1) 로빈 리버, 조이스 짐머맨, 『예배와 음악』, 허정갑, 김혜옥 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5-6, 243-265.

그러나 ‘지도자 또는 전문인’이란 위치에서 교회음악인을 논한다면 교회음악인이라는 명제를 좀 더 무게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 소고에서 한국교회의 교회음악현실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교회음악은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 관련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미리 밝혀두지만 오랫동안 계속된 논쟁을 회고하려는 내용이 아니며 대부분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음악인이 될 수 있는 방향과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오늘 학술 포럼의 주제와 같이 ‘대화’의 자리에 먼저 말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II. 본론

1. 교회에서 음악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현황(명칭, 고용형태, 사례 등)

A. 명칭

구분	일반	전문	소속
전통(예전)교회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연주자 등	찬양사역자, 음악목사/전도사, 음악감독, 성가사	(예배)음악위원회(부)
합창지도 단계	찬양인도자, 악기연주자, 음향담당자(엔지니어) 등	예배(찬양)인도자, 간사, 전도사, 예배목사 등	교육위원회(부)

B. 교회음악전문인의 역할과 자질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음악을 포함한 예배찬양 영역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인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거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을 통해 교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연주자보다는 예배인도자를, 음악가보다는 목양자를, 그리고 전문가보다는 교육가를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²⁾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회음악전문인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재고하게 한다.³⁾ 초대 교부로부터 천주교 사제로 잘 알려진 그레고리 I세(Gregory I), 암브로우스(St. Ambrose), 비트리(Philippe de Vitry), 마쇼(Machault, 1300-1377), 던스터블(Dunstable, 1390-1453), 옥케겔(Ockeghem, 1430-1495), 비발디(Vivaldi, 1678-1741)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사제의 신분으로 전문 교회음악 활동을 하였다.⁴⁾

2) 이상일, “음악사역자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의식과 음악사역자 제도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6-4(2014), 419-448.

3) Paul Westermeyer, The Church Musician, Harper & Row, Publishers, San Francisco, 1988, 13.

4) 김남수,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 (서울: 요단 출판사, 1995), 21.

교회음악전문인 역할	예배인도(활성화), 목양, 교육, 교회의 음악수준 향상 등
교회음악전문인 자질	음악성, 소명감, 신앙심, 인격 등

목회자들이 교회음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이다. 찬양은 곡조를 붙인 설교이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훌륭한 매개체로서 은혜와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준 높은 음악적 고려가 자칫 과시적 연주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쉽고 이는 교회에서 음악을 하는 이들의 자기만족으로 표출될 때도 종종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양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도 될 수 없는 것이다.⁵⁾

C. 교회음악관련 고용형태⁶⁾

항목		전임	비전임	자원봉사
예배참석 교인 수	100명 이하	10%	60%	30%
	101~500명	10%	50%	40%
	501명 이상	20%	40%	40%

설문 결과 재정적으로 열악한 작은교회나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전임은 아니어도 비전임사역자를 고용하여 사례를 지급하는 사례를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중대형 교회의 사역현황에 비해 (비)전임 사역자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로 다소 예상치 않은 설문결과였다. 교회규모와 재정에 다소 여유가 있는 교회들일지라도 음악적으로 상당한 재정을 투자하는 곳과 반대로 음악 사역자의 대다수를 무료봉사직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D. 사례비 현황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니”(민18:21)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스7:24)

제한된 지면상 전부 다루지는 않겠으나 교회음악의 사례에 대한 역사는 성서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간략하게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했던 교회음악전문인 Samuel Sebastian Wesley(1810-76)는 교회 안에 한 가지 직능만을 담당하는 단순한 기능인보다는 찬양대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능력을 가진 경우에 보다 많은 사례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⁷⁾ 비슷한 시기

5) 이정익, “찬양에는 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음악학회지』, 2011(가을), 31-32.

6) 필자가 소속한 교단현황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설문을 통해 집계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

7) Trevor Beeson, *In Tuneful Accord: The Church Musicians*, SCM Press, London, UK., 2009, 25.

에 프랑스에서도 교회음악전공자들에 매일 2프랑(francs)씩 매년 600에서 800프랑을 사례비로 지급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⁸⁾ 아래 도표는 한국교회 목회자 및 교회음악영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의 사례비 현황을 설문을 통해 작성한 자료이다.

1) 일반목회영역

	경력	사례(월)
A	신학생	무료~30만원(매학기 소정의 장학금)
B	신학대학원 재학중	40만원~80만
C	교단인준자 및 목회안수자 이상	80만원(비전임)~150만(전임)

2) 교회음악영역

구분	반주자	지휘자	독창자	찬양인도자	음악감독(목회)자
학부	무료~25만원	무료~35만	무료~25만	무료~25만	해당없음
대학원	25~40만	30만~70만	25만~35만	25만~40만	40만~80만
교단인준자	해당없음	40만~80만	25만~40만	35만~55만	40만~120만

3) 각 나라별 사례비현황⁹⁾

* ppt 자료 참고!

2. 교회음악지도자 및 전공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과정 실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음악전문인들의 활동범위, 고용실태, 역할과 기능 및 사례비 현황들은 결국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결과라 하겠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기관의 교회음악 교과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소망하기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교회음악 현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미래의 교회음악 전문인들의 활동 범위와 위치를 보다 전문적인 잣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Orpha Ochse, *Organists and Organ Playing in Nineteenth-Century France and Belgium*,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IN., 1994, 125.

9) 양정식, “교회음악전공자 사례비 연구: 미국(교단/교파별)과 그 외 나라별 사례비,” 『성경과 신학』, 78(2016), 281-308.

A. 대학별 교회음악 교과정 운영 현황

1) 교회음악(학)과 운영 현황

학교명	소속교단	교회음악(전공)과	비 고
연세대학교	초교파 (에큐메니칼)	합창지휘, 오르간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은 일반음악과로 운영 중
서울장신대학교 (경기도 광주시)	예장(통합)	피아노, 성악, 오르간	미디어음악 교과과정 및 CCM교과 과정 운영, 본교 신대원 진학특혜
한일장신대학교	예장(통합)	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 오르간	작곡의 경우 선택에 따라 고전적 음악양식과 실용음악분야로 전공공부를 할 수 있음
총신대학교	예장(합동)	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 오르간, 지휘	교회음악과는 신학부에 소속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예장(통합)	피아노, 성악, 작곡, 오르간, 지휘, 음악이론	전공에 상관없이 건반은 필수
칼빈대학교	예장(합동)	피아노, 성악, 오르간	
서울신학대학교	기성	피아노, 성악, 작곡, 오르간	
침례신학대학교	기침	성악, 오르간, 관현악	피아노과는 일반음악학부로 분리운영

2018년 10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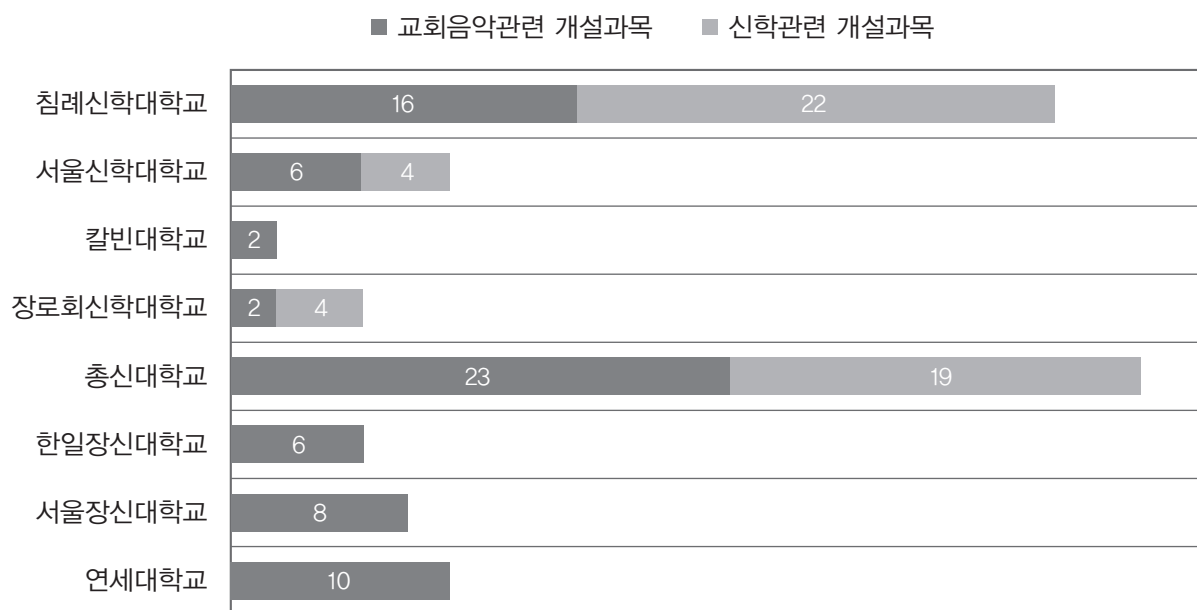
2) 교회음악(학)과 교회음악 및 신학관련 학과목 개설현황(필수과목)

학교명	교회음악관련 개설과목		신학관련 개설과목		계	
	과 목 명	학점	과 목 명	학점	교 음	신 학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개론 교회음악합창 찬송가학 예배와음악	2 2 3 3			10	
서울장신대학교	교회음악연주실습 예배와음악	6 2			8	
한일장신대학교	교회음악개론 찬송가학 찬송가예배연주	2 2 2			6	
총신대학교	교회음악 이해를 위한 서양음악사 I, II 교회음악인을 위한 시창청음 II 교회음악인을 위한 화성학 I, II 교회합창합주 I - VI 교회음악입문	4 1 4 12 2	인성과 구약산책 I · II 섬김과 신약의 세계 I · II 철학의 이해와 통섭 종교개혁과 신앙윤리 종교개혁과 문화 기독교와 통일교육 기독교인성과 섬김의 리더	4 4 3 2 2 2 2	23	19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개론	2	구약성경 신약성경	2 2	2	4
칼빈대학교	찬송가학	2			2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입문 교회음악사 교회음악행정	2 2 2	기독교의이해 성서의이해	2 2	6	4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개론 예배와음악 찬송가학 교회음악교육 현대예배음악	2 2 2 2 2	구약성서개론 신약성서개론 조직신학개론 교회사개론 침례교회의 역사 예배학 선교학개론 경건생활지도 I · II	3 3 3 3 2 3 3 2	16	22
	찬송인도의 이해와 실제 예배반주법 위십양상불 성가곡연구와 연주 교회음악편곡법 성가대지도 예배기획과 인도	6 각 2학점 3과목 선택				

* 각 학교의 채플은 배제함/2018년 10월 현재

총신대와 침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커리큘럼은 일반 음악대학의 교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아 교회음악 전공자를 양성하는 교과과정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부 과정에서 심화된 교회음악대학원의 커리큘럼은 어떨까? 음악목회자와 전문 교회음악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석사(신학/목회음악전공, M. Div. with C.M.)와 교회음악석사(M.C.M.)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총신대, 침례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교과과정(필수과목)을 비교하여 보았다.

학교명	교회음악관련 개설과목			신학(교양)관련 개설과목	
	과 목 명		학점	과 목 명	학점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M. A. C. M.	교회음악문헌세미나 교회음악행정워크숍 교회음악사세미나 예배와음악세미나	3 3 3 3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M. C. M.	예배와 음악 찬송가학 교회음악사 교회음악문헌	2 2 3 2	구약개론 신약개론	3 3
				역사신학 체계신학 실천신학 중 택1	3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M. Div. with C. M. 신 학 목 회 음 악 과	교회음악철학과행정 예배와음악 예배기획 I 음악목회실습 I · II 교회음악사 예배인도 I 교회음악문헌	3 2 2 2 3 2 2	신약개론 I · II 구약개론 I · II 전도학 교회사개론 I · II 목회신학개론 조직신학 I · II 설교학 침례교회사 침례교신학 교육목회론 예배학 목회상담학 기독교윤리학	6 6 3 6 3 6 2 3 3 3 3 3 3
총신대 (교회음악대학원) 교회음악 지도자과정 / 찬양사역 지도자과정	M. C. M.	교회음악철학 교회음악문헌연구/II 합창/II 교회음악워크숍 교회음악세미나 교회음악인턴쉽 교회음악인을위한딕션 칸타타오라토리오연구 예배와 음악 찬양과경배 중 택1 성가편곡법 CCM작, 편곡법 중 택1	2 2 2 2 2 2 2 2 2 2 2	신약서론 구약서론 음악목회서론 기독교세계관 찬송가학 교회론 논문 찬양사역프로젝트	2 2 2 2 2 2 2



1924년부터 2년마다 대학(원)내 음악관련 학과의 학위 과정을 위한 자격과 기준들을 제시하여 각 대학의 교과정과 교육내용을 평가해 오고 있는 미국음악대학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Music, NASM)는 교회음악 전문인 양성 학위과정과 그 평가 영역을 Sacred Music, Church Music, Music and Worship, Worship Leadership, Music Ministry로 분류하였다. 협회는 교회음악전문과정에 65%의 음악전공관련 교과정과 35%의 신학 및 교회음악관련 과목을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의 평가기준으로 언급하였다.¹⁰⁾ 바람직한 교회음악전공 리더십이 양성되고 현장에 나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학교육보다는 교양이, 교회음악과목보다는 일반음악과목이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다뤄지고 있는 점은 교회음악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3. 교단별 제도적 규정과 내용

연세대학교가 1955년 신과대학에 종교음악과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1974년에 총신대학교, 1976년에 서울신학대학교, 1978년 고신대학교, 1983년에 침신대학교, 그리고 1988년에 서울장신대학교와 호남신학대학교 등이 종교음악과를 개설하여 교회음악전문인 양성에 나섰다.

조속자교수와 이상일교수는 선행연구¹¹⁾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료¹²⁾를 통해 지역교회 담임목회자들 대부분이 음악목회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비)전임사역자의 수가 확대되지 못하고 목회과정을 거쳐 음악목회자가 되려는 지원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음악사역자 제도의 부재이다.

10) <https://nasm.arts-accredit.org>

11) 조속자, “본 교단 ‘음악 목사’ 제도화를 위한 연구,” 「장신논단」, 15, 1999, 613-634.

하재송, “한국 교회에서의 음악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 <총신100만 연구논문집>(총신대학교, 2009), 635-692.

12) 이상일, “음악사역자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의식과 음악사역자 제도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6(4), 2014, 419-448.

1) 일반목회영역

1995년도 제80회 총회에서 교회음악사 자격증제도를 통과시키었고, 그 총회 이후로 이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 규정에는 교회음악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내의 교회음악과의 재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부출신에게 ‘성가사’란 명칭과 대학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성가장’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자격고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제도로 남아 있다. 아래는 연구자료에 함께 첨부된 제도내용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음악사 규정(1995년 제80회 총회 회의록, 331-333)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기독교교육사, 교회음악사, 교회사회복지사 자격과정 운영(시행) 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목회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전문적으로 사역할 기독교교육사, 교회음악사, 교회사회복지사의 자격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과정설치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는 아래와 같은 자격 선발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제2장 지도운영위원회

- 제4조 지도운영위원회
1. 본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총회신학교육부내에 지도운영위원회를 둔다.
 2. 인원은 15인 정도로 하되 신학교육부 임원 3명(부장, 서기, 회계), 각 신학교 해당 학과장, 총회총대 5명으로 조직한다.
 3. 신학교육부 임원은 매년 교체되고, 신학교 해당 학과장은 연임되며 총회총대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회총대위원은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일시에 전원 교체하지 않고 2명, 3명으로 한다.
 4. 지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둔다.
 5. 지도운영위원회는 지도지침서(교과과정, 지도지침, 평가기준)를 편집 제작한다.

제3장 설치 및 운영

- 제5조 설치
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총회산하 신학대학교의 해당 학과 내에 둔다.
- 제6조 자격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총회산하 신학대학교 내의 해당 학과의 재학생으로 한다.
- 제7조 자격증의 명칭
본 과정을 이수한 자는 기독교교육사, 교회음악사, 교회사회복지사라 한다.
- 제8조 훈련년한
본 과정의 연한은 각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으로 하되 4년 미만으로 한다.

- 제9조 과목
- 본 과정은 다음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기독교교육사
- ① 신학영역: 성서개론, 조직신학개론, 역사신학개론, 실천신학개론, 기독교윤리, 기독교교육개론
- ② 전공영역: 기독교교육사, 성서교육방법, 기독교교육행정, 인간관계훈련
2. 교회음악사
- ① 신학영역: 성서개론, 조직신학개론, 역사신학개론, 실천신학개론, 기독교윤리, 기독교교육개론
- ② 전공영역: 찬송가학, 예배와 음악, 교회음악개론, 교회음악행정, 한국교회음악사
3. 교회사회복지사
- ① 신학영역: 성서개론, 조직신학개론, 역사신학개론, 실천신학개론, 기독교윤리, 기독교교육개론
- ② 전공영역: 기독교사회복지론, 기독교사회복지방법론, 기독교사회사업사, 기독교사회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자원복지론, 기독교환경복지론
- 제10조 자격증 수여
- 본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신학교에서 매 졸업년도의 1월 말까지 신학교육부에 그 명단을 보고하고, 그 명단이 보고된 자에게 총회장은 기독교교육사, 교회음악사, 교회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 제11조 취업요건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산하 각 교회와 기관은 총회장이 수여한 자격증을 받은 자에게 한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 제12조 운영기관
- 본 과정의 운영업무는 신학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제4장 평가

- 제13조 평가방법은 지도지침서에 준한다.

제5장 부칙

- 제14조 본 규정은 총회 출석 과반수로 개정할 수 있다.
- 제15조 본 규정 이외의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제16조 본 규정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음악사(敎誨音樂士) 규정(안)

총칙

1.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의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단의 교회음악사 고시위원회로부터 부여되는 성가장과 성가사의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교회음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적, 도덕적, 음악적 면에서 검토되는 일정한 절차와 시험을 거친다.
3. 교회음악사의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신학교에서 교회음악을 4년 이상 배운 사람을 위한 것이다.
4. 교단의 신학교 이외의 곳에서 음악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교단에서 정하는 별도의 교회음악 교육과정을 통해 성가장과 성가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참조: 별정 성가장과 성가사 규정)
5. 교단은 교회음악사 제도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단 신학교의 교회음악과 교수들과 교회음악에 관심이 있는 교단내의 인사들로 구성된 고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자격증을 수여하는 일을 맡게 한다.
6. 고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교단은 시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7. 교회음악사 자격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를 둔다.
 - 1) 지휘자 성가장 자격증
 - 2) 지휘자 성가사 자격증
 - 3) 반주자 성가장 자격증
 - 4) 반주자 성가사 자격증성가장 자격증은 대학원 수준을, 성가사 자격증은 대학 수준을 요구한다.
8. 각 교회의 당회는 공석이 되는 성가장과 성가사의 자리를 자격증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해야 한다. 교회는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된 자리를 공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9. 여러 성가장과 성가사 지원자 중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는 일은 각 교회가 결정한다.

성가장의 직무 범위

1. 성가장과 성가사는 교회가 회중찬송가를 잘 부를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지닌다.
 - 1) 정기적인 찬송가부르기 시간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도 가르친다.
 - 2) 어린이들의 찬송가교육
 - 3) 젊은이를 위한 찬양시간 진행
 - 4) 교회의 요청이 있는 곳에서의 찬송가교육
2. 성가장과 성가사는 교회성가대가 매 주일에 있는 예배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닌다. 교회가 요구하는 성가대 찬양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예배에서 하나님 찬양, 말씀선포, 신자들의 감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성가장과 성가사는 성가대의 책임자이다. 그는 성가대원의 신앙적, 음악적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성가대의 책임자는 예배적 의무를 갖기 때문에 예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관심을 갖고 예배의 내용에 맞는 음악을 선정, 실시해야 한다.
4. 건반악기를 연주하는 성가장과 성가사는 회중찬송을 실질적으로 인도한다. 회중들의 찬송을 잘 이끌어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성가대의 반주자로서 책임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5. 성가장과 성가사는 당회의 요청이 있으면 여건이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 합주단을 조직, 지도하여 교회음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6. 성가장과 성가사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선교행사, 장례식, 결혼식, 여타의 교회행사에 음악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7. 성가장과 성가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회음악을 들려주는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8. 성가장과 성가사는 성가대와 평신도의 교회음악 교육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9. 성가장(성가사)과 목회자는 공통적으로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회 안에 다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성가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의견교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의견교환은 당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다.

10. 성가장(성가사)은 개교회의 교회음악 전반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한 음악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회중찬송가의 선정은 목회자의 일로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중찬송가를 성가대가 음악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1. 성가장과 성가사는 절기에 맞는 찬양부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와 함께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협의가 목회자와 성가장(성가사) 사이에 있어야 한다.
12. 성가장과 성가사는 교회의 악기를 잘 관리, 유지하는 책임을 지닌다.
13. 성가장과 성가사가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그 대리자를 지명하여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직무수행이 장기간(3개월) 불가능할 경우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해야 한다.
14. 교회에서 사용되는 악보는 교회가 구입해야 하며 성가장과 성가사는 정리대장을 만들어 이를 잘 관리, 보존해야 한다.

성가장(성가사) 자격고사 규정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성가장과 성가사 자격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자격고사를 실시한다.
2. 고사위원은 총회에 의해 임명된다. 고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들의 숫자는 7명 내외로 한다.
3. 고사위원들은 회원 가운데 한 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고사실시의 최종책임자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위원장이 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4. 고사위원들은 각 과목의 시험에 필요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을 위촉하여 각 과목의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된다.
6. 지원자는 만 23세를 넘어야 한다.
7. 지원자는 교단에 속한 신학교의 교회음악과(대학 또는 대학원)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원서
 - 2) 이력서
 - 3) 세례증명서, 또는 입교증명서
 - 4) 소속교회의 당회장 추천서
 - 5) 교단소속 신학교 교회음악과 졸업증명서
 - 6) 호적등본
9.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피아노(또는 오르간)
 - 2) 지휘
 - 3) 시창 청음
 - 4) 화성학 대위법
 - 5) 한국교회음악사
 - 6) 예배학
10. 시험결과는 “수,” “우,” “미,” “가”로 판정되고 “가”는 불합격 처리된다.
11. 합격자가 받는 증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대학원 수준을, 성가사 자격증은 대학 수준을 요구한다.

8. 각 교회의 당회는 공석이 되는 성가장과 성가사의 자리를 자격증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해야 한다. 교회는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된 자리를 공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9. 여러 성가장과 성가사 지원자 중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는 일은 각 교회가 결정한다.

성가장 증서

지휘자 성가장 자격:

이름: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성가장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함.

시험 종류:

- 1) 피아노(또는 오르간)
- 2) 지휘
- 3) 가창
- 4) 화성학 대위법
- 5) 한국교회음악사
- 6) 예배학

평균총점:

20 . .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가장 교사위원회
위원장 교사위원

별정 성가장 규정

1. 지금까지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은 6개월의 단기교육을 받고 성가장과 성가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은 '별정 성가장'(또는 성가사)로 지칭된다.
2. 별정 성가장과 성가사의 단기교육을 위해서 성가장 교사위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로회신학교, 호남신학대학교와 협력하여 방학 중에 열리는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3. 특별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별정 성가장과 성가사의 자격이 수여된다.
4. 별정 성가사의 자격증에는 "별정"이라는 표시를 명기한다.

(3개 학교 교과과정 비교 생략)

교과과정 조정안

1. 전공필수

전공실기	8(16)
시창, 청음	4(8)
화성학	4(8)

대위법	2(4)
음악사	4(8)
찬송가학	1(2)
예배와 음악	1(2)
교회음악개론(이론)	1(2)
합창	8(8-16)
지휘법	2(4)
가창(성악전공 이외의 전공은 필수)	2(4)
한국교회음악사	1(2)
반주법(건반악기 외 전공은 필수)	2(4)

2. 교양(신학)필수

국어	2(4)
영어	4(8)
체육	2(2)
예배학	1(2)
신약	2(4)
구약	2(4)
한국사	1(2)
교양 4과목 16학점, 신학 3과목 10학점	계: 26학점

특징

1. 세 학교의 공통되는 과목을 우선으로 했다.
2. 교회음악사 자격 시험과목을 채택했다.

대학원교과과정안

필수 21학점, 선택 9학점, 전공실기 6학점(3학기 2학점), 논문(연주, 실기시험) 3학점
계: 42학점

1) 전공실기	3(6)
2) 합창지도론	2(6)
3) 반주법	2(6)
4) 음악분석	1(3)
5) 논문(연주, 시험 학점)	

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2013. 5. 29. 제107년차 총회 개정판)

제5장 지교회

제4절 교역자

제42조(전도사)

2. 자격

음악전도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의 전 과정과 교단 소정의 교역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지교회에서 청빙 받은 자로서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칭호와 직무

라. 음악전도사

음악전도사는 당회의 위임에 따라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회음악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단, 음악전도사는 담임전도사로 청빙될 수 없다.

제43조(목사)

2. 자격

다. 음악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과정과 교단소정의 교역자과정을 이수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4. 칭호

아. 음악목사

음악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교역자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음악전도사로 시무한 경력이 있으며 연령이 28세 이상 된 자. 단 음악목사는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으며 담임목사로 청빙 받으려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3)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한국침례회에는 음악목사 제도가 없다. 침례신학대학교에는 1997년에 M.Div. in Church Music 학위과정이 신학대학원에 개설되었다. 2000년에는 교회음악대학원이 생기면서 M.Div. in Church Music 과정이 교회음악대학원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교회음악대학원에는 MCM 과정과 M.Div. in Church Music 과정이 있는데, 전자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교회음악사역자가 될 학생을 위한 과정이고, 후자는 음악목사를 위한 과정이다. 2009년에 M.Div with Church Music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뺀 거의 모든 필수 신학과목을 교과과정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음악목회자에 관한 교단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졸업 후 음악전도사나 음악목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사역하는 경우가 매우 미미하다.

1998년 한국교회음악학회에서 주최한 세미나 자리에서 “한국교회 전임음악가제도를 위한 교과과정 연구”와 “교회음악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과과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당시 정정숙(서울신대), 조숙자(장신대), 송금섭(수원중앙침례교회 음악목사), 원성희(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소인(장신대)의 발제하였다. 조숙자교수는 당시 게재된 글을 통해 바람직한 교회음악 전문직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과 제도적인 현황을 언급하면서 신학과목과 교회음악과목을 확대 보완하여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13) 조숙자, “본 교단 ‘교회음악사’ 자격증제도와 교회음악학과 교과과정 연구,” 「장신논단」, 46(4), 1998, 419-448.

4) 성서적인 교회음악지도자에 대한 기록들

“다윗이 군대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가 이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북기야와 맛다냐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예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암 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웃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곡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 백팔십팔 인이라.” (역대상 25:1-7)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이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 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역대상 29:25-30)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일백이십 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12-14)

“건축자가 여호와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에스라 3:10-12)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40-43)

이름	성서 속 묘사	직분
אֶתָנ 에단 (Ethan)	레위(Levi)의 아들 / 므라리(Merari)의 12대손(대상 6:44) / 구사야(Kushaiah)의 아들(대상 15:17)	낫제금을 잘 치는 타악기 연주자(대상 15:19)
כְּנָנִיָּה 그나냐 (Kenaniah)	레위 사람의 족장(대상 15:22) /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궐을 옮길 때	합창 인도자, 성악가, 노래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 (대상 15:27)
אַסַּף 아삽 (Asaph)	레위의 아들 / 게르손(Gershon)의 14대손(대상 6:39) / 다윗 왕의 장막에서 첫 예배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의 책임자(대상 16:5) / 왕의 예언자(대하 29:30) / 시편 50, 73~80편의 작곡자	예배 인도자, 지휘자, 작곡자, 음악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
הֶמָּן 헤만 (Heman)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대상 15:17) / 그핫(Kohath)의 20대손(대상 6:33) 다윗 왕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은 기악부를 담당하던 사람. 하나님말씀의 대언자이며 왕의 선견자(대상25:5) /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 *열네 아들과 세 딸 모두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섬김(대상 25:6)	음악 책임자, 오케스트라 지휘자(대상 16:41, 42)
יְדֻתָּן 여두둔 (Jeduthun)	레위의 아들 므라리의 12대손(역대상 14~16장) 다윗 왕 때에 현악부를 담당하는 사람, 왕의 선지자(대상 25:3), 시편39, 62, 77편의 작곡자 *여섯 명의 아들들 모두 악기와 찬양을 부르는 자로 섬김(대상 25:3)	음악감독, 지휘자

위의 성경속의 기록들을 보면 오늘 나누는 대화의 주제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있다.

“구별하여, 직무대로, 세마포(예복)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헤만의 열네 아들과 세딸, 부녀자와 어린아이...”

오늘날 교회음악지도자들이 구별된 자격과 모습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요 이들은 제사장으로 왕의 선견자로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연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교회음악지도자에 대해 제언

본 소고를 통해 목회자들이 바라는 교회음악지도자의 역할과 능력은 단순히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음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오히려 예배 전체에 관여할 수 있으며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교육적이며 행정적인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매년 최저임금과 학력 및 경력수준 그리고 활동범위에 따라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된 사례기준을 가진 많은 나라들에 비해 교회음악전공자들의 적정한 사례기준뿐만이 아니라 구인기준 조차도 없는 관례적인 사역 환경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논쟁의 소지가 있겠으나 교회음악전공자들의 사역이 식당이나 주차 등 주일에 교회의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평신도들의 섬김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은 어쩌면 모두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한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

다. 이러한 현실은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사역을 하는 음악담당자들과 이것을 목회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 모두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음악지도자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자 해결책의 시작이란 생각에 현재 대학(원)을 중심으로 교회음악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교회음악을 보다 깊이 있는 목회의 분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육과 더불어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지식 그리고 교회음악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교회와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은사를 잘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잘 정비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안에 성장하고 양육되는 많은 후학들과 전문인력들을 교회와 관련기관에서 고용하여 활용하지 않는다면 교회음악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단적으로 교회음악 전문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 마련된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과정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찬양(讚揚), 찬미(讚美), 찬송(讚頌), 경배(敬拜), 예전(敬拜), 전례(典例) 등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의 경우에 ‘찬양(Praise/Hymn)’과 ‘예배(Worship/Service)’란 단어로 통합해 통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음악(Church Music)’을 정의하는 데 앞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적 접근을 잠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선은 “교회음악”이란 단어가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넓게 포용되는 단어란 사실이다. 아마도 기존에 교회음악인을 양성하는 교육장소로 각 교단 산하의 신학교의 학과 명칭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교회음악의 정의를 찾기 위해 찾아본 사전적 의미들조차 교회음악의 명확한 정의보다는 다양한 음악장르 중의 하나로 분류한 정도다.¹⁴⁾ 교회음악을 보다 포괄적으로 대체할 가장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예배음악(Worship Music)’이 곧 ‘교회음악’인가 등 이러한 명제들은 수세기 거듭돼 온 학문적 논쟁인 ‘예배(Worship)’인가 ‘예전(Liturgy)’인가에 대한 상관된 적용이 필요하다.¹⁵⁾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위의 각 단어들의 어원적 이해이다. 예배의 어원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구약의 샤하(שָׁחָה), 아보다(עֲבֹדָה)와 신약의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εω),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들과 찬양의 어원으로 폭넓게 적용해 온 구약의 할랄(חָלַל), 야다(יָדָה), 바락(בָּרַךְ) 또는 신약의 아이네오(αἰνέω)는 모두가 행위를 동반한 사역형 동사들에서 왔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은 예배자들의 행위 즉 삶을 동반한 일체의 반응이 함께 사용되어질 때 그 뜻과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이다.¹⁶⁾

‘교회음악’의 역사적 시발점이 교회의 존재 유무에 있다면 그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교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웨이커, 형제단, 구세군같은 다양한 전통과 유대적 전통을 가진 민족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에 그 포용성과 수용성이란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¹⁷⁾ 뿐만 아니라 구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개신교적 개념인 ‘교회음악’을 ‘예전음악’이란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상반된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 연구와 학문적 수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절충안으로 가장 적절한 용어를 ‘기독교 음악(Christian Music)’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교회음악의 이러한 용어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용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이다.¹⁸⁾ 즉 교회음악을 하는 사람(음악목회자, 지휘자, 음악감독 등), 이끄는 지도자와 같은 관계성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음악의 개념적 이해와 확립은 성서적인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구속사적

14)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IV., edit. by Stanley Sadie, Whashington D.C.: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0) 383., Ameri Grove,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edit., by Don Michael Randel. (Cambridge, Belknap Harvard, 1986), 166. 등 권위 있는 사전들조차 그 의미나 개념을 정의하기 보다는 음악적 장르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을 뿐이다.

15) 로빈 리버, 조이스 짐머맨, 『예배와 음악』, 허정갑, 김혜옥 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5-6, 243-265.

16) 김순환, 『예배학 총론: 예배와 삶의 통섭을 추구하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2-23

17) 로빈 리버, 조이스 짐머맨, 『예배와 음악』, 246-252.

18) 앞의 책, 247.

역사성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 음악’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음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대신할 수 있는 용어이다. 누가복음 2장에는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Christian)들이다. ‘교회음악지도자’는 다름 아닌 ‘기독교음악지도자’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이름표를 달아주신 부르심과 소명아래 복종과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학술포럼 토론 질문

1.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

2.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회음악지도자상(像)은 무엇입니까?

- 1) 신앙적인 면
- 2) 음악적인 면
- 3) 인격적인 면
- 4) 사역적인 면

3. ‘목회자가 교회음악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음악 분야에 대한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교회 사역에서 목회자와 교회음악지도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구약에 있어서의 음악지도자의 위치에 대한 의견
- 2) 미국 교회에서의 음악목회자의 위치에 대한 의견

6.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내에서의 교회음악 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대부분의 목회자에게 교회음악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교회음악 조직과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계획
- 2) 교회음악인 양성에 대한 계획

8. 교회음악지도자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9.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음악 분야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목회자로서 교회음악지도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대 이사장(회장) 및 임원진

	연 도	이 사 장	부 이 사 장	사 무 국 장
1 대	1951 - 1952	김 치 목	박 학 전	윤 심 원
2 대	1952 - 1955	김 치 목	한 인 환	김 노 현
3 대	1956 - 1957	김 치 목	나 운 영	김 노 현
4 대	1958 - 1959	김 치 목	한 인 환	곽 상 수
5 대	1960 - 1963	박 태 준	한 인 환	이 동 훈
6 대	1964 - 1967	박 태 준	한 인 환	구 두 회
7 대	1968 - 1969	박 태 준	한 인 환	박 재 훈
8 대	1970 - 1971	박 태 준	이 유 선	이 남 철
9 대	1972 - 1973	박 태 준	이 유 선	김 두 완
10 대	1974 - 1975	이 유 선	서 수 준	김 정 해
11 대	1976 - 1977	이 유 선	김 정 해	김 홍 경
12 대	1978 - 1979	서 수 준	구 두 회	김 홍 경
13 대	1980 - 1981	구 두 회	최 성 진	김 홍 경
14 대	1982 - 1983	최 성 진	김 정 해	김 홍 경
15 대	1984 - 1985	김 두 완	김 홍 경	황 철 익
16 대	1986 - 1987	김 두 완	김 홍 경	이 관 섭
17 대	1988 - 1989	김 홍 경	백 태 현	이 관 섭
18 대	1990 - 1991	백 태 현	이 관 섭	안 경 재
19 대	1992 - 1993	이 관 섭	윤 학 원	김 형 석
20 대	1994 - 1995	이 관 섭	윤 학 원	김 형 석
21 대	1996 - 1997	윤 학 원	김 형 석	오 진 득
22 대	1998 - 1999	윤 학 원	김형석, 전희준	오 진 득
23 대	2000 - 2001	김 형 석	전희준, 오진득	박 영 근
24 대	2002 - 2003	오 진 득	박영근, 전희준	이 수 철
25 대	2004 - 2005	오 진 득	박영근, 이수철	이 문 승
26 대	2006 - 2007	이 수 철	박 영 근	이 문 승
27 대	2008 - 2009	박 영 근	이 문 승	이 대 구
28 대	2010 - 2011	이 문 승	이 대 구	장 우 형
29 대	2012 - 2013	이 대 구	이 상 길	이 병 직
30 대	2014 - 2015	이 상 길	이 병 직	고 덕 환
31 대	2016 - 2017	이 병 직	박 신 화	이 기 선
32 대	2018 -	이 기 선	박 신 화	임 창 은

2018년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회

- 고 문 :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이문승 전희준 안경재 여흥은 이대구 이상길
- 직전이사장 : 이병직
- 이 사 장 : 이기선 ● 부이사장 : 박신화 ● 사무국장 : 임창은 ● 사무차장 : 공기태
- 서 무 이 사 : 한창석 ● 부서무이사 : 박동희 ● 재무이사 : 홍권옥 ● 부재무이사 : 김선아
- 감 사 : 고덕환 윤의중
- 각 분과 및 위원장 : 하계대학분과(윤학원), 역사편찬분과(이문승), 학술분과(하재송), 홍보분과(김용훈)
- 이 사 : 강기성 강영모 강옥민 구 천 권영일 김경란 김귀철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성봉 김영호
김옥자 김용훈 김은석 김철륜 김희영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환 손효동 신현민
신효철 양은호 양정식 오윤희 유병무 유병용 윤태빈 윤학봉 이근엽 이동훈 이보철 이상훈
이선우 이인호 장우형 전영혜 주성희 차영희 천인한 최원범 최훈차 하재송 홍정표 황철익
(가나다순)
김선아 김인재 정승택(신임이사) / 최경열(추천이사)
- 당연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학(대전) 조기용(경기남) 이광수(울산) 장철진(목포) 신동환(인천) 김 돈(영남)
김성식(순천) 김희송(안 산) 박희분(청주) 오승진(광주) 조미숙(여수) 황녹연(천안)
- 편집 위원 : 김용훈 박상욱 박장우 ● 간 사 : 임은희

